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46호

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·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지원과), 02-970-6043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17. 7. 25. 개정 2018. 1. 26. 전부개정 2020. 12. 9. 개정 2021. 10. 19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학생지도위원회) ①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포상

제4조(포상의 종류 및 대상)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학업상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- 2. 공로상: 탁월한 지도력 및 봉사정신을 가진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생
- 3. 학술상: 권위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은 학생
- 4. 선행상: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활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
- 5. 문화상: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
- 6. 총장특별상: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- 7. 총동문회장상: 총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제5조(포상의 발의)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.

- 1. 공적조서
- 2. 지도교수 추천서
- 3. 학부장이나 학과장 의견서

## 제3장 징계

제6조(종류 및 기간)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근신: 3일 이상 7일 이내
- 2. 유기정학: 30일 이하
- 3. 무기정학: 30일 초과

- 4. 제적(권고퇴학, 명령퇴학)
- 제7조(징계의 대상) 징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학칙 또는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한 학생
- 2. 시험 부정행위자,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한 학생
- 3. 폭력을 행사한 학생
- 4.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되어 물의를 일으킨 학생
- 5. 기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학생
- 제8조(징계의 적용) 징계는 행위 시의 정황, 동기, 평소언행, 학업태도 및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제9조(징계의 발의)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. 단,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.
- 1. 사건경위서
- 2. 학생 진술서
- 3. 지도교수 의견서
- 4. 학과(부) 회의록
- 5. 단과대학 교무회의,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또는 인권센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
- 제10조(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) ①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 장"이라 한다)은 학생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고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어야 하며, 학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- ②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, 위원 장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,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석 예정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심의·의결할 수 있 다.
- 1.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
- 2.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,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3. 기타 부득이한 사유(소재 불명 등)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교 부 또는 송부할 수 없는 경우
- ④ 위원장은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속,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 교수와 학과(부)장 등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징계의 의결) ① 위원장은 징계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징계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생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하되,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.

- 제12조(징계의 처분) ① 위원장은 징계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위워회 회의록
- 2. 학생징계의결서
- ② 학생을 징계 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 대상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한 대학(원)장에게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제13조(징계처분의 재심의) ① 총장은 징계 의결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,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보 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1.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- 2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  제14조(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) ① 징계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
  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1. 위원회 회의
- 2.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
- 3. 위원회 회의록
- 4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다.
- 제15조(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)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나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 야 한다.
-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.
- ③ 정학 및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- 제16조(징계의 해제) ① 총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뉘우치는 태도가 현 저하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② 대학(원)장은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해 별지 서식5 특별지도 결과보고서 및 별지 서식6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위원장에게 징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기정학의 경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(제24호, 2012. 3. 1.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제398호, 2017. 7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제423호, 2018. 1. 2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18. 3. 1.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(제569호, 2020. 12. 9.)

이 상·벌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제646호, 2021. 10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제1호 서식]

					출	Ż	석 통	지	서				
	성명				생년월일								
인 적 사 항	대학 (원)		·			(화 부			학년			학번	
٥	주	- 소											
4	출석이유	-											
ě	출석일시	1		년	월		일		시	분			
÷	출석장소	<u>-</u>											
유 의 사 항	2. 사장에 되어도 자신인을 이고자 를 빼내는 장에게인의 계획을 연결까지 고급하고록 연결까질 제출을												
서	울과학기	술대학교 /	상·벌 규	정 제10						석할 것을 통	통보합1	니다.	
					년	!	월	일					
			,	서울과학	학기술대	학교	1 학생지도?	위원회	위원정	· 직인			
					귀 :	하							
	(절 취 선) 진 <b>술 권 포 기 서</b>												
01		성명								생년월일			
인 적 사	대학 (원)			학 과	<sup>(학</sup> 부)			학 년		학 번			

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

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 귀하

주 소

## [별지 제2호 서식]

# 학생장계의결서

	성명		생년월일	1
징계대상자 인적사항	대 학 (원)	학 학과 부 )	학년	성명
	주 소			
의결주문				
이 유				
		년	월 일	
		학생지도	위원회위원장 (직인)	

## [별지 제3호 서식]

#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

	성 명								생년월일		
대 학				학과	<sup>(</sup> 학 부			학 년		학 번	
처	분내용										
ା	<del>유</del>	별첨	학생징계	의결/	서 사본	과 같음					
	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
					서울고	<b>라</b> 학기술τ	대학교 총장	· 2	직인		
00	) 이 귀	하									

## 학생 징계 대장

연번	소속	학번	성명	징계 처분일자	징계 처분내용	징계처분사유	징계 처분권자	비고

[별지 제5호 서식]

# 특별지도 결과보고서

소 속	학 번	학년	성 명

	2021	

2021. . .

작성자(지도교수) : (서명)

확인자(학과장) : (서명)

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귀중

#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

소 속	학 번	학년	성 명

2021. . .

작성자(지도교수) : (서명)

확인자(학과장): (서명)

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귀중